

교육과정운영규정

제 1 장 총 칙
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우리대학의 설립이념과 교육목표를 반영하고, 학문의 발전과 사회적 환경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교육과정의 편성 및 개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교육과정 영역) ① 교육과정은 교양, 전공, 교직으로 구분하여 편성한다.

② 전공교과란 해당 학과의 인재양성유형 및 목표 직무에 적합한 인재양성에 필요한 개론, 기초, 이론 및 실습교과목을 포괄한다.

③ 교양교과란 대학의 사명 및 인재상 달성에 필요한 전공 외 교과목으로서, 인성 및 직업 기초교양을 말한다.

④ 교직교과란 교원자격증 취득에 필요한 교과로 관련 법 및 시행령, 시행규칙에 의거하여 구성하며, 전공교과에 포함하여 운영한다.

제3조(교육과정 편성원칙) ① 교육과정 편성에 있어서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.

1. 대학의 설립이념, 교육목표 및 인재상과의 연계성
2. 사회적 환경 변화 및 학문 발전 추이
3. 기 편성된 교육과정에 대한 평가와 운영상의 개선 사항(수요자 만족도 및 요구 조사)
4. 대학의 중장기 발전계획 및 부서·학과별 발전계획
5. 전공 관련 직종에서 성공적 직무수행을 위해 공통적으로 요구되는 사항

② 교육과정은 이론과 실습이 연계되도록 편성한다.

③ 교과이수에 있어 학점과 이수시간은 동일하게 편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, 필요 시 총장의 승인 후 조정·편성할 수 있다.

④ 교과이수 단위는 학점으로 하고, 1학기 15시간 이상의 강의를 1학점으로 한다.

⑤ 교직과목 설치학과는 교원자격검정령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라 기본이수영역 과목을 반드시 편성하여야 하고, 편성된 과목 중 교육학개론에 성범죄예방 및 양성평등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.

⑥ 산업현장에서 요구되는 직무능력완성도가 높은 전문직업인을 양성하기 위하여 현장중심의 역량 및 직무기반의 교육과정을 개발하여 편성할 수 있다.

제 2 장 전공교육과정

제4조(전공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) ① 학과별 전공교육과정은 학과에서, 통합전공교육과정은 주관 부서 및 학과에서 교육과정 편성원칙을 고려하여 편성하고 교육과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운영할 수 있다.

② 국가자격증취득 관련학과에 한하여 전공교과 편성학점을 초과하여 운영할 수 있다.

③ 현장실습교과의 경우 현장실습학기제운영규정에 따른다.

④ 실험·실습·실기 교과목은 실무중심의 교육과정 운영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학과 및 전공별 편성비율을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 다만, 학과 특성 및 관련 법령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총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.

1. 예체능계열 학과 및 전공 50% 이상

2. 인문사회계열 학과 및 전공 20% 이상(예체능계열 중 인문사회계열 융합학과 포함)

⑤ 전공 교과목의 수강신청인원이 10명 미만인 경우에는 폐강 한다. 다만, 수강신청인원이 10명 미만인 전공 교과목 중 졸업 직전 학기의 강좌 또는 학과 요청에 따른 개설유지가 필요한 교과목 등 강좌 개설을 유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총장의 승인을 얻어 개설한다.

제5조(전공교육과정의 일부 수정) 학과는 기 개발된 교육과정의 인재양성유형과 목표직무의 변동이 없는 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별도의 개편 연구 없이 일부 교과목의 수정을 할 수 있다.

1. 일부 교과목의 명칭 변경이 필요한 경우

2. 일부 교과목의 학점 또는 시수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

3. 일부 교과목의 개설 학년 또는 학기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

제6조(전공교육과정의 평가) ① 학과는 전공교육과정의 운영결과에 대해 매년 자체평가를 시행하고 그에 따른 개선계획을 추진하여 교육과정에 대한 지속적 교육품질 개선을 실시하여야 한다.

② 교육과정위원회에서는 학과별 교육과정 자체평가 결과를 심의하며, 주관부서는 이를 바탕으로 차년도 교육과정의 개발 또는 개편 계획을 수립한다.

제 3 장 교양교육과정

제7조(교양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) ① 교양 교과목은 교무처에서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하여 편성하고 교육과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운영할 수 있다.

1. 사회적 요구에 부합하는 직업생활에 필요한 기본적 능력 함양

2. 인성 함양과 지성인에게 요구되는 지적소양과 통찰력 습득

3. 학제 간 융·복합 교양 교육과정의 개발과 운영을 통해 창의적 인재양성 도모

4. 학생 및 산업체의 요구사항 반영

② 직업기초능력 교과목은 해당 전공의 직무능력을 고려하여 학과에서 편성하고 교육과정

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운영한다.

③ 편성된 직업기초능력 교과목은 학과의 요청에 따라 교무처에서 개설한다.

④ 교양 교육과정은 다음과 같은 사항의 경우 위원회 심의를 거쳐 운영하지 않을 수 있다.

1. 수강인원 20명 미만으로 2개 학기 연속하여 폐강된 경우
2. 수강신청 인원 대비 교과목 이수율 50% 이하인 경우
3. 강의평가 기준점수 미달인 교과목

제8조(교양교육과정의 평가) 교양교육과정은 그 운영결과에 대해 매년 자체평가를 시행 하고 그에 따른 개선계획을 추진하여 교육과정에 대한 지속적 교육품질 개선을 실시하여야 한다.

제9조(교육과정위원회 운영) 교육과정 편성기준 및 교육과정표를 심의하고 효과적인 교육과정 운영을 위하여 교육과정위원회를 구성·운영하며, 세부사항은 교육과정위원회규정을 따른다.

제10조(보칙)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기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총장의 승인을 얻어 시행한다.

부 칙

① (시행일) 이 규정은 2025년 5월 14일부터 시행한다.